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82
----------	-------

발의연월일 : 2025. 8. 26

발 의 자 : 박성민 · 김은혜 · 구자근
엄태영 · 박형수 · 추경호
조지연 · 정동만 · 김기현
조정훈 · 윤영석 · 강승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바, 해당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련한 세제지원 제도도 함께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0%를 공제율로 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을 통해 중복자산을 양도하거나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세제지원
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위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3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5)(중전의 4)) 중 “3)”을 “4)”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석유화학산업시설”로 한다.

4)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석유화학사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석유화학산업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5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4조의36(석유화학산업의 합병에 따른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간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으로써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7(석유화학사업의 노후자산등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석유화학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초과한 노후자산
 2.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자산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
-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화학산업시설 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유화학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유화학산업의 합병에 따른 자산 양도 및 석유화학산업 노후자산 등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 3) (생략)

<신설>

2. -----

가. -----

-

1) ~ 3) (현행과 같음)

4) 「석유화학산업의 경쟁
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석유화학사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석
유화학산업시설”이라 한
다)에 2029년 12월 31일
까지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
0분의 3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로서 최
초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른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간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으로써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신 설>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7(석유화학사업의 노후자산등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석유화학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연
한(耐久年限)을 초과한 노후
자산

2.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자
산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
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
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
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